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25. 9. 23.(화)

경제건설위원회

- 목 차 -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4

3.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7

4.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5.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6.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7.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19

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9.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기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3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양은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해 공공요금 지원 규정을 반영하고,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카드 수수료 지원 및 공공요금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제1항)

○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 정비(안 제6조제2항)

4.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 지원 근거 및 카드 수수료 지원의 내용과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통신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을 일컫는 것으로 지난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조치에 협조한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전기요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 사례가 있으며, 2022년부터 시작된 전기요금 현실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5.1.21. 개정, 2025.7.22. 시행) 개정으로 정부가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여타 공공요금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의8에 따른 공공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자체적인 지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우고 물가 급등 및 재난·위기 등에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해서는 지난 2023년부터 울주군, 전주시, 공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최근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실효성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검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

- 대　　상: 음식업, 제조·도소매업, 미용·자동차정비 등 총 548명
- 방　　법: 온라인 조사
- 조사결과: 응답자 중 63%가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며, 지원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 **43%가 '매우 만족'**, **36%가 '다소 만족'**으로 총 **79%가 만족**
- 만족요인
  - **카드수수료 지원(29.8%),** 자금 특례보증·대출(28.1%), 시설·환경 개선(10.3%)
- 개선요구
  - 지원금 규모와 조건(12.4%), 신청 절차 복잡성(6.2%)

○ 또한,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정 신청의 경우와 사업장의 이전·폐업에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둠으로써 한정적인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실질적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대내외적 경기불안 및 물가 인상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써 카드수수료의 지원 및 공공요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어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위법함이 없고,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집행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요금 급등 추이에 따라 업종 또는 지역, 지원 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7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신달호 의원 등 4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약물 사용 인식 확산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예방계획 수입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 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크웹, 배달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마약 유통이 증가하면서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의 급격한 증가세와 함께 저연령화 되어 가는 추세를 나타내는 등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예방 교육 필요성 측면에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 예방계획 수립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조문 구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국가는 물론 지역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타당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시 내에서는 시를 비롯하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수성구, 달서구 6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적으로는 10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2개의 교육청에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에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박영동 위원: 소관 부서에서는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자에 대한 케어 또는 지원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8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박주용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재활용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친환경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최근 환경 문제는 세계적인 주요 이슈로,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폐기물 문제는 환경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과 같은 일회성 광고물은 비친환경적인 소재(폴리에스테르계)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비용적 문제로 인해 재활용이 쉽지 않고 대부분 소각이나 매립되어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규범적 조치로, 환경보호와 자원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와 제5조에「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에 대한 사항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및 조문 구성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임을 인증하는 독자적인 인증마크 개발과 친환경 현수막 제작 업체의 지정, 친환경 현수막 전용 지정게시대의 운영 등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검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우리군에서는 광고물 정비 등을 통해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사업에는 미온적이나, 조례 시행 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5. 6. 5.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과 기업의 동행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6월 5일(목),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참여기업: SK케미칼㈜, ㈜세진플러스, ㈜리벨롭, ㈜카카오
- 참여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강릉시, 청주시, 나주시, 창원시

○ 참고로 유사 입법사례를 살펴보면 2025. 9. 1. 기준 전국 8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곽동환 위원장: 폐현수막을 농가에서 농경지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검토하기 바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699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곽동환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영농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 사업자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 경영 안정 및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운영계획 수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한 농번기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달성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고용 및 생활 지원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의 효율적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번기 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촌 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가의 생산 안정과 소득 증대를 통해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외국인 고용 시 발생하는 출입국 관련 비용의 지원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정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수시 점검, 관리, 교육 등 집행기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최근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차별금지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3개 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곽동환 위원장: 소관 부서에 대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질의함.

☞ 집행기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 상세히 답변.

▶ 달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 도입방법: 해외 업무협약(MOU) 체결(캄보디아)

· 도입기간: E-8비자(3개월, 5개월, 8개월 택 1)

구분	2024년	2025년
근로자 배정현황	**14개 농가, 31명**	**33개 농가, 69명**

· 계절근로자 지원 내용

-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사증발급인정서(VISA) 허가신청
- 입·출국 시 인솔 및 차량 지원(달성군청 또는 농가 ⇄ 공항)
- 비자검진(E-8 마약검사) 검사비 지원
- 외국인등록 수수료 지원
- 임금통장 발급을 위한 행정업무 지원 등

○ 신동윤 위원: 본 사업의 농가 수요에 대해 질의함.

☞ 집행기관: 현재 농가의 신청 수요에 대해 100% 근로자를 배정하였으며, 신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0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신동윤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군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화하며, 개방된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설 사용허가 기준 마련 및 적용 전 공개 근거 신설
(안 제4조제3항~제4항)

○ 시용신청 경합 시 달성군민 우선권 부여 및 적용기준 명확화
(안 제5조제2항~제3항)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파크골프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허가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고, 군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편의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시설의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 시 군민에게 공개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제2항과 제3항에 달성군민 우선권 부여와 세부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안 제6조제4항에 시설의 개방시간・이용절차・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군수가 규칙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요구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위법함이 없고,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생활체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급증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우리군 생활체육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쳐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세부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1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체육시설 관리·운영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사용허가 규정을 일원화하고,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와 안전사고 예방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안 제25조)

○ 운영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점검 규정 신설
(안 제26조)

○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서 화원게이트볼장 삭제(별표1)

○ 군민체육관 회원권 월회원 기준을 ‘주 6회’로 변경(별표2)

4.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5조(수탁자의 의무)와 안 제26조(안전사고 예방)를 신설하여 수탁자에게 성실한 관리 의무와 안전관리, 안전점검에 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별표2 군민체육관 회원권 중 월회원의 기준을 현행 ‘주5회’에서 ‘주6회’로 변경하여 회원의 이용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급증하는 생활체육시설 수요에 적극 대응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생활체육관련 조사에 따르면 생활체육인의 수는 급증하고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인들의 대부분이 이용료가 저렴한 공공체육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생활체육시설 부족의 체감도는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일본·영국 등 생활체육 선진국처럼 지속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생활체육인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자 추이 분석 등을 통해 시설별 이용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2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발 의 자: 박영동 의원 등 3인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5. 9. 11.)

2. 제안사유

○ 무선안전방비와 융·복합 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 사고예방 및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부는 지난 2021년 3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3을 신설해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 비용을 계상하고, 특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의무화하여 현장 적용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본 조례안은 그동안 입법을 통한 규제와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어렵고 건설안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현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가 일선의 건설 현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설 관계자의 관심이 필수 전제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관련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추후 기술 발달 및 보급이 이뤄져 대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적용할 여건이 마련되는 경우 본 조례안 제4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스마트 건설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2709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2.)

2. 제안사유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증가와 함께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등 주민 불편 및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대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무단방치에 대한 단속 및 견인 비용 부과 기준 등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범사업 등의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 안전교육 항목을 명확히 규정(안 제5조)

○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규정 강화(안 제9조)

4. 관계법령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와 군민 불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시범사업 및 실태조사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무단방치된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달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총 426건이며, 경기 2천594건, 서울 1천354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실정입니다. 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총 6명이며, 대구시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시 195건과 비교하면 대구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사고뿐만 아니라, 무단 방치 행위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교통 안전 문제도 급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의 정비와 함께 단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의2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안전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단속 범위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포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처리의 근거를 기존 「도로법」 제74조와 「행정대집행법」 외에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추가함으로써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이용자의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련 법령 및 조문 구성 등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바, 당초 무단방치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대여사업자만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 비용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해당 조문	제출의견 반영 해당 조문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한 경우 그 **대여사업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한 경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후단 생략>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조치는 자칫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의 관리와 교통안전, 그리고 '군민의 안전'이라는 가치 아래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며, 단속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대, 가상주차구역의 설치 등 기반 시설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PM) 거치대 현황(2025. 3월 기준)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사구군	67개소	0	0	0	10	31	19	7	0
	984대	0	0	0	71	662	90	161	0
민간 (PM 스테이션)	91개소	0	0	0	0	0	45	46	0
	420대	0	0	0	0	0	180	240	0
합계	158개소	0	0	0	10	31	64	53	0
	1,404대	0	0	0	71	662	270	401	0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 신달호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주차, 무단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뿐만 아니라, 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거치대나 보관시설의 제공도 같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달성군 관내에는 거치대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거치대 설치 검토를 요청함.

○ 박영동 위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시 안전모 미착용 이용객이 많은 현실임. 거치대 설치와 함께 공유형 안전모 설치도 검토해 주기 바람.

○ 곽동환 위원장: 도로 상에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매우 심각한 상황임. 소관 부서에서는 조례 시행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주기 바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과정

○ 의안번호: 제 2710호

○ 발 의 일: 2025년 8월 29일

○ 제 출 자: 달성군수

○ 회부일자: 2025년 9월 8일

○ 상정 및 의결: 제320회 달성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2025. 9. 12.)

2. 제안사유

○ 관리·운영 조례 중 도동지구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상한액 산정 후 시행규칙에서 이용성, 관리성에 근거한 사용료를 명시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 예방계획 수입 및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도동지구의 이용자 편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명칭 변경, 사용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달성군수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호에 도동지구 각 시설물의 명칭을 이용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현 행		개정안
도동유교문화관	⇒	도동유교문화관 내 전시관
서원문화관	⇒	서원문화관
복합문화관	⇒	사랑방
서원스테이	⇒	숙박동(매,난,국,죽)
공동취사장	⇒	휴게실
린넨실	⇒	화장실
숙직실	⇒	관리사무실
그 밖의 시설	⇒	그 밖의 시설
수목	⇒	수목
조형물	⇒	조형물

○ 이는 ‘서원스테이’란 용어가 현재 도산서원, 병산서원 등에서 진행되는 숙박과 함께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일컫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어 한옥형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군 시설과는 혼선의 여지가 있어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명칭 변경으로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명확하겠으나, 감성적인 명칭으로 관광객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최근의 관광 경향과 달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안 제8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 별표2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별표2의 범위에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은 조례에서는 사용료의 최고 상한 기준을 정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군민과 이용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 2의 사용료는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유사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높은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만 이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최고 상한선기준이며, 집행기관에서 시행 예정인 규칙의 별표 사용료를 보면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와 협의 또는 보고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별표]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시설명		면적(㎡)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의 주중	기준인원	
숙박동 (매난국죽)	대나무	36	1박	100,000	90,000	2인	방 1개
	국화,매화	38		140,000	100,000	4인	방 2개
	난초	51		180,000	130,000	6인	

구 분		사용기준		사 용 료(원)	비 고
부대 시설	사랑방	오전	9:00 ~ 12:00	20,000	시설 일부 사용 시 전부 사용 간주
	휴게실	오후	13:00 ~ 17:00	40,000	
		야간	18:00 ~ 22:00	60,000	
	서원문화관	1일	9:00 ~ 22:00	90,000	

○ 각종체험프로그램의 사용료는 그 수요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시설/프로그램 이용시간, 물가의 정도,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공익 및 군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 "성수기"란 1년 중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그 밖의 기간을 말한다.
○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은 제외)의 전날을 말한다.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 김보경 위원: 이용객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를 위해 명칭을 개정하는 취지는 이해되나, 도동서원은 '유테스코 세계문화유산' 이라는 고유한 브랜드 가치가 있으므로 추후 단순 숙박 서비스 뿐만 아니라 서원의 문화를 살리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홍보에 노력을 당부함.

○ 박영동 위원: 안 제8조제2항에서 현행 조례 별표2의 사용료는 최고 상한 기준이라고 하지만, 너무 높은 금액으로 개정되어 집행기관에서 사용료 인상 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집행기관: 추후 시행 예정인「대구광역시 달성군 낙동가람 수변 역사누림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별표]에 따른 실제 사용료는 유사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오히려 조금 저렴한 수준이며, 추후 규칙을 개정하여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의회에 보고와 협의를 한 후 인상하겠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